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. 2. 13 선고 2014가단3930 판결 [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2. 4.

판결 선고 2015. 2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7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2013. 3. 5. 피고와 사이에,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3층 다중주택 중 201호에

관하여, 임대차보증금 57,000,000원, 임대차기간 2013. 3. 12.부터 2014. 3. 12.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7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나.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,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,000,000원만을 반환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47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권성우